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9. 27 선고 2022가단543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5.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강문희

별 지 목록

1. [토지]

충청남도 당진시 전 1,111㎡

2. [토지]

충청남도 당진시 대 694㎡

3. [토지]

충청남도 당진시 전 351㎡

4. [토지]

충청남도 당진시 대 513㎡

5. [건물]

충청남도 당진시 [도로명주소]충청남도 당진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아스팔트형광)지붕 2층단독주택

1층 83.46㎡

2층 54.26㎡

6. [토지]

충청남도 당진시 일야 4,667㎡

청 구 원 인

1. 조세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간의 지위

원고는 현재 소의 채납자 B(이하 '채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 548,052,290원을 가진 채권자이고, 채납자는 ㄷ C의 자녀이며 피고는 ㄷ C의 배우자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조세채권의 발생

원고 산하 성동세무서장은 아래 <표1> 과 같이 채납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채납자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2. 6. 7. 소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10건, 548,052,290원을 채납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채납유무조회).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채납자 B의 소재기일 현재 국세 채납내역

(단위 : 원)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계	채납액	귀속년 월	납세의무 성립일
1	부가가치세	2017.09.30	58,462,350	76,806,570	201701	2017-06-30
2	부가가치세	2017.12.31	19,445,200	28,720,150	201707	2017-09-30
3	부가가치세	2018.03.31	1,795,710	2,587,220	201707	2017-12-31
4	부가가치세	2018.06.30	7,594,140	10,669,460	201801	2018-03-30
5	부가가치세	2018.09.30	24,957,180	34,165,990	201801	2018-06-30
6	부가가치세	2018.10.25	16,075,000	21,886,010	201807	2018-09-30
7	종합소득세	2017.11.30	4,775,000	7,109,870	2017	2017-06-30
8	종합소득세	2018.11.30	52,012,500	69,956,650	2018	2018-07-30
9	종합소득세	2018.12.31	210,735,190	281,858,150	2017	2017-12-31
10	종합소득세	2019.01.31	52,012,500	14,292,220	2018	2018-07-30
사해행위일 이전 납세의무 성립된 채납액소계			447,864,770	548,052,290		

다.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성립

피고는 배우자 C이 2019. 5. 12에 사망하자, 채납자를 포함한 상속인들과 사망을 원인으로 2019. 5. 12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3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6. 4. 대전 지방법원 당진 등기소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2019. 5. 12. 이고 위 국세채권은 전액 납세의무성립일이 사해행위일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국세채납액 548,052,290원은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

1)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소외 채납자는 2019. 5. 1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명의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는 상속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에 관하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한 2019. 5. 12.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 당시 채납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채납자는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은 59,475,053원이었으며 소극재산은 국세채납이 548,062,290원에 달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갑 제2호증 채납유무조회, 갑 제5호증 채납자 B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가액, 갑 제9호증 채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10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 제11호증 개별공시지가토지등급목록조회, 갑 제12호증 자동차시세).

〈표 삼입을 위한 여백〉

<표2>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현황

(단위:원)

구 분	내 역	평가액	비고
계		△488,577,237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지분 ¹⁾	13,411,727 ²⁾	채납자 B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가액 (갑 제5호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E (지분 548.77/8628)	10,583,12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10호증), 개별공시지가표지
	충남 당진시 F	32,480,200	등급목록조치 (갑 제11호증)
자동차	제네시스(차량번호 1 생략)	3,000,000	자동차시세 (갑 제12호증)
적극재산계		59,475,053	
국세채무	종합소득세 등	548,052,290	채납유무조치 (갑 제2호증)
소극재산계		548,052,290	

1) 亡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4명이므로, 자녀인 B의 상속지분은 11분의2이라 할 것입니다.

2) 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233,764,500원에서 근저당채무 150,000,000원을 제외한 73,764,500원 x 상속지분 2/11 = 13,411,727원

3) 소 결(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체결)

채납자는 사해행위일인 2019. 5. 12. 당시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아래 <표3> 2019. 5. 12. 당시 근저당채무를 차감한 재산평가액 73,764,500원 중 본인 지분 11분의 2에 해당하는 13,411,727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은 당연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표3 : 채납자 B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포기한 부동산>

소재지	구분	면적(m ²)	근저당채무(원)	재산평가액(원)	재산평가기준	소유자 (상속인)
충남 당진시 G	토지	1,111	150,000,000	28,108,300	개별공시지가토지등급 목록조회(갑제6호증)	A
충남 당진시 H	토지	694		-	-	
충남 당진시 I	토지	351		9,441,900	개별공시지가토지등급 목록조회(갑제6호증)	
충남 당진시 J	토지	513		26,214,300	개별공시지가토지등급 목록조회(갑제6호증)	
충남 당진시 H, K	단독주택	137		160,000,000	개별주택가격조회 (갑제7호증)	
충남 당진시 K	토지	4,667	-	-	-	

*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확인한 바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근저당채무 150,000,000원으로 확인됨(갑 제8호증 계약인수계약서(L조합 근저당채무))

나. 채납자의 사해의사

채납자는 아버지인 C의 2019. 5. 12.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 지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미납세금이 상당하여 정상적으로 상속 등기시 관할세무서인 성동세무서의 채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하여 질 수 있음을 알고 공동상속인들과 2019. 5. 12.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을 포기한 사실로 보아 상속 포기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피고의 악의

1) 관련판례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점에 대하여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2) 이 사건 피고의 악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채납자의 어머니로서 채납자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납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욱이 관련판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외 채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은 피고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제척기간

원고는 채납자의 아버지인 ㉠ C에 대한 상속재산관련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따른 등기부등본을 2022. 3. 4. 열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상속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라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원상회복의 방법

① 원칙적으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 ②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 행위 취소소송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③ 채납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는 점, ④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망 C에게서 채납자에게로)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할 것을 구하고자 합니다.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채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에 기해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